

2004년도 시행 제46회 사법시험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헌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제 1 문〉

국내 주요 신문사의 기자인 甲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 I 급비밀로 분류되어 극소수의 국가 중요정책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甲은 위 군사 I 급비밀을 담당하는 A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위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A는 언론사가 위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보도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위 정보를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A와의 인터뷰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마치 A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기사화함으로써 A의 명예도 훼손하였다. (50점)

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나. 위 군사 I 급비밀의 내용을 담은 보도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다. A가 취할 수 있는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을 서술하시오.

제 2 문

〈제2문의 1〉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제2문의 2〉

국무총리의 부서권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제2문의 3〉

헌법소원에서의 보충성의 원칙 및 그 예외를 약술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

2004년도 시행 제46회 사법시험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행 정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A郡은 포도 등 과일의 주산지로 이들 과일의 생산에 의하여 전체 농가 소득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관상용으로 주택, 가로 또는 묘지 등에 심은 X나무가 포도 등 과일나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X나무의 식재(植栽)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A郡의회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1) A郡에서는 X나무를 심거나 기르지 못한다. 2) 기존의 X나무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가 있는 자는 1년 안에 X나무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X나무 식재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50점)

- 가. 위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군수 및 도지사의 통제방법을 논하시오.
나. 위 조례가 공포·시행된 후 A郡 관내에서 X나무 묘목을 생산·판매하는 甲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논하시오.

제 2 문

〈제2문의 1〉

사행행위 영업의 하나인 투전기영업허가를 받은 甲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허가관청에 대하여 허가갱신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甲은 허가갱신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허가갱신거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였다. 甲의 집행정지 주장의 당부와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제2문의 2〉

담당공무원이 법령의 적용과정에서 법령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

2004년도 시행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상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제 1 문〉

甲은 A주식회사와 대금 5억원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2억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입하였다. 몇 개월 후 A주식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위 상가건설을 중단하게 되자, 甲은 위 상가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납입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A주식회사의 자산이 전혀 없어서 대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상가분양 당시 A주식회사의 주식은 외형상 丙 등 4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丙이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도 외관상 회사로서의 명목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회사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丙 개인의 의사대로 이루어져 왔고, 한편 대표이사인 乙은 丙에게 대표이사 직인을 맡긴 채 丙의 의사대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 위 상가분양도 丙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납입된 분양대금도 丙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위 사안에서 甲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로부터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丙은 그 어음에 보증을 하였다. 그 후 배송되어 온 컴퓨터를 확인한 甲은 자신이 주문한 사양과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이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30점)

〈제2문의 2〉

영업소의 개념과 법률상 효과를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

2004년도 시행 제46회 사법시험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민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제 1 문〉

甲은 乙은행 모 지점 지점장인 丙에게 2002. 5. 9.부터 2003. 7. 9.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서 금 3억원을 乙은행에 예탁하여 달라고 맡겼다. 그러나 丙은 甲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는 乙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A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다. 한편, 丙은 甲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때마다 乙은행의 수기식(手記式) 정기예금증서를 甲에게 교부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자신의 돈으로 乙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乙은행은 1990년도에 업무전산화를 한 이후로는 위와 같은 수기식 정기예금증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후 2004. 3.경 위 A회사가 도산하자, 丙은 甲에게 위 예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甲·乙·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다음에 관하여 논하시오. (25점)

- 가. 임야 (가)의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그 임야상의 수목을 매수한 乙이 그 명인방법을 갖춘 후에, 甲이 그 수목을 포함한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丙은 乙에 대해 그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만일 乙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중에 丙이 그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만을 갖추었다면 어떠한가?
- 나. 임야 (나)의 소유자인 A는 그 임야상의 수목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유보하고, 그 지반인 토지만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B는 그 토지와 수목을 C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C는 A에 대해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제2문의 2〉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의 분할비율과 소극재산의 분할비율을 달리한 경우, 그러한 재산분할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2004년도 시행 제46회 사법시험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응시번호

성명

<제 1 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丙에게 골동품을 매도하고 그 골동품을 丙에게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가. 위 소송에서 乙은, 丙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어 위 매매계약은 자신과 무관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나. 甲은 丙이 乙과 무관하다는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丙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예비적으로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 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방법은?

2. 甲은 1.의 나.항과는 달리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위 골동품의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주위적 청구만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 2 문

〈제2문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서면이 이용되는 각 경우를 설명하시오. (25점)

〈제2문의 2〉

甲이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乙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乙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반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2004년도 시행 제46회 사법시험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제 1 문〉

동업관계에 있는 甲과 乙은 2000. 3. 15. A로부터 대지 50평을 매수하였다. 그 후 2002. 10.경 甲과 乙이 위 대지에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려면 위 대지와 인접한 대지 2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도 매수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는 B는 2002. 5. 20. 이미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있지만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고 본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B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건 부동산을 甲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甲과 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얻어, 필체가 좋은 乙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B, 매수인란에 甲, 계약일자란에 2002. 2. 10.이라고 기재하여 B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乙은 뒤늦게 甲의 사업추진 방식에 불안을 느끼고 소 제기를 만류하였지만, 甲이 말을 듣지 아니하자 구두로 동업을 해지하고 자신은 앞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甲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단독으로 법원에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A선박회사 연구개발부의 직원인 甲은 입사할 때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甲은 A선박회사가 甲을 포함한 많은 연구 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도면을 A선박회사에서 甲에게 제공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위 설계도면을 빼내 외국에 있는 경쟁 선박회사에 팔아 한몫 잡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A3 복사지 2장에 위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 그 후, 甲은 직접 외국으로 가서 위 설계도면을 사용하겠다는 외국의 경쟁 선박회사와 접촉하여 이를 팔기로 합의한 뒤, 경쟁 선박회사 사장에게 3억원을 받고 위 설계도면을 건네주었다. 한편 甲의 상사인 연구개발부장 乙은 甲의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30점)

〈참조 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제2문의 2〉

다음 놓여놓은도로정비법 제33조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근거를 논하시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의무에 관하여 제32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

2004년도 시행 제46회 사법시험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甲은 2003. 5. 24. 23:00경 서울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乙(女)을 강도강간할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차에서 내릴 수 없게 한 다음 2003. 5. 25. 01:00경 수원시 소재 아파트공사장에 도착하였다. 甲은 그곳 승용차 안에서 乙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乙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승용차 안에 감금된 상태에서 강도당한 사실만을 진술하고 수치심 때문에 강간당한 사실은 숨겼으나, 검사는 피의자 甲을 수사하던 중 감금상태에서의 강도범행뿐만 아니라 강간범행도 명백히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甲에 대하여 강도죄로만 공소제기하였다. 법원은 2003. 7. 18. 甲에 대하여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甲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2003. 8. 11.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자 검사는 2003. 8. 25. 甲을 감금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시 공소제기하였다.

이 경우 강도죄로 먼저 공소제기된 부분과 나중에 감금죄 및 강간죄로 공소제기된 부분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쟁점을 모두 논하시오. (단, 법원은 이 사안에서 감금죄와 강도강간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있음)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다음은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어느 피고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① 199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1996.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② 2002. 8.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③ 1997.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는 자로서,

④ 상습으로, 2004. 1. 19. 23:00경 서울 소재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망치와 드라이버로 뜯어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철제 소형금고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돈 200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1. 위와 같이 공소장에 피고인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①, ②, ③ 각 전과기재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개념을 설명하고, 위 ①, ②, ③, ④의 각 기재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30점)

〈제2문의 2〉

현행 ‘피의자보석’에 대하여 논평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